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519
----------	-------

발의연월일 : 2025. 7. 17.

발 의 자 : 이정문 · 한민수 · 이학영
문진석 · 복기왕 · 박 정
김남근 · 김원이 · 김동아
김현정 · 한준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모바일 및 인터넷뱅킹 등 은행업무가 디지털로 전환되어 비대면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은행은 지점을 축소하고 있는 추세임. 이로 인해 농어촌 지역주민 및 디지털 취약계층 등 대면거래를 선호하는 이용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대응책이 부재한 상황임.

은행권은 자율적으로 은행 점포폐쇄 공동절차를 마련하여 지점 폐쇄 전 영향평가 실시, 대체수단 마련 등을 실시하였으나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함께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공동절차를 개정하였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폐쇄 지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은행의 지점 폐쇄 절차를 명확히 법률에 마련하는 한편, 인구 감소지역에 은행대리업을 도입하여 은행 지점 수요를 대체하고, 디지털

털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은행대리업을 인구감소지역을 영업구역으로 하여 은행을 위해 은행의 업무를 대리·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

나. 은행이 지점을 폐쇄하려는 경우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폐쇄 사실을 사전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위원회는 은행이용자의 접근성을 위하여 지점 폐쇄에 대한 대체수단을 마련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3).

다. 은행대리업의 인가 및 인가 취소 요건을 규정하고, 금융기관이 은행대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인가를 받은 것으로 봄(안 제43조의5 및 제43조의6).

라. 은행대리업의 업무범위는 은행업무의 대리 또는 중개업무로 하되 은행을 위하여 대리·중개한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함(안 제43조의10 및 제43조의12).

마. 은행대리업자는 인가받은 영업구역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점을 설치하여야 함(안 제43조의11).

바. 은행대리업자의 서류 작성·보존의무,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이용자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관리 의무, 경영공시 및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등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43조의14부터 제43조의16까지, 제

43조의18 및 제43조의19).

사. 은행의 은행대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금융위원회의 은행대리업자에 대한 제재를 규정함(안 제43조의17).

아. 은행은 은행대리업자가 은행대리업을 영위하면서 이용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43조의2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호의2 및 제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은행대리업”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영업구역으로 하여 은행을 위해 은행의 업무를 대리·중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의2. “은행대리업자”란 은행대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2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3(지점 폐쇄) ① 은행은 지점을 폐쇄하려는 경우 지점의 폐쇄가 은행이용자의 접근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지점 폐쇄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지점폐쇄영향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에는 폐쇄대상 지점이 소재한 지역의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지점의 폐쇄로 인하여 은행이용자의 접근성이 현

저히 낮아진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수단을 마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은행은 지점의 폐쇄일 3개월 전에 폐쇄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6개월 전에 공시하여야 한다.

⑤ 은행은 지점 폐쇄 이후 은행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의2(제43조의5부터 제43조의2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은행대리업

제43조의5(은행대리업의 인가) ① 은행대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은행대리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이 250억원 이상일 것
2. 은행대리업 경영에 드는 자금 조달방안이 적정할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은행대리업을 경영하기에 충분한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추는 것

③ 제2항에 따른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에 은행대리업자의 건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은행대리업 인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43조의6(금융기관의 은행대리업 등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제43조의5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은행
2.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7.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43조의7(은행대리업 인가 취소) 금융위원회는 은행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은행대리업자에 대하여 6개월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은행대리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은행대리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
2. 인가 내용 또는 인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영업정지 기간에 그营业을 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외의 경우로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43조의8(최저자본금) 은행대리업자는 제43조의5에 따른 인가를 받아 은행대리업을 경영할 때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3조의9(인가 등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제43조의5에 따른 인가를 하거나 제43조의7에 따라 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43조의10(업무범위) ① 은행대리업자는 은행업무의 대리 또는 중개 업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은행대리업자는 은행대리업무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이외의 업무를 운영할 수 없다.

제43조의11(지점의 설치) 은행대리업자는 인가받은 영업구역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3조의12(대리·중개업무의 표시) 은행대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을 위하여 업무를 대리·중개한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3조의13(유사상호 사용 금지) 은행대리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은행대리 또는 은행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거나 그 업무를 표시할 때 은행대리업무 또는 은행중개업무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제43조의14(서류의 작성·보존 의무) ① 은행대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은행대리업과 관련된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은행대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그 밖의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하거나 은행대리업무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의 보존기간, 보존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15(업무보고서의 작성·제출) ① 은행대리업자는 대리·중개하는 은행별로 구분하여 매월의 업무 내용을 기술한 보고서를 각 해당 은행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대표자와 담당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3조의16(이용자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 ① 은행대리업자는 이용자의 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은행대리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이용자의 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또는 다른 이용자의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의17(지도·감독 및 제재) ① 은행은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예금자 등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대리업자의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은행대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은행대리업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이용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2.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제43조의18(경영공시) 은행대리업자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제43조의19(준용규정) 제34조제1항,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제3항은 은행대리업자에 준용한다. 이 경우 “은행”은 “은행대리업자”로, “은행업”은 “은행대리업”으로 본다.

제43조의20(손해배상책임) 은행은 은행대리업자가 은행대리업을 영위하면서 이용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은행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 중 “은행”을 “은행 및 은행대리업자”로 한다.

제6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3조의7에 따른 인가의 취소

제66조제2항 중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은행업을 경영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은행업을 경영하는 자
2. 제43조의5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은행대리업을 경영하는 자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은행의 임원”을 “은행(은행대리업자를 포함한다)의 임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43조의8을 위반하여 최저자본금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제69조제1항제7호의5를 제7호의10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5부터 제7호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니한 은행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5. 제43조의13을 위반하여 유사상호를 사용한 자

7의6. 제43조의15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은 은행대리업자

7의7. 제43조의16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재산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은행대리업자

7의8. 제43조의18를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한 은행대리업자

7의9. 제43조의19에서 준용하는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한 은행대리업자

1. 제2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지점폐쇄영향평가의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4. 제43조의19에서 준용하는 제3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은행대리업자

1. 제2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폐쇄 사실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공

시를 게을리 한 은행

2.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니한 은행

3. 제43조의12를 위반하여 대리·중개업무를 표시하지 아니한 은행
대리업자

4. 제43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존
의무를 게을리 한 은행대리업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신설>	1의2. “은행대리업”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영업구역으로 하여 은행을 위해 은행의 업무를 대리·중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신설>	2의2. “은행대리업자”란 은행대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 10. (생략)	3. ~ 10.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설>	제28조의3(지점 폐쇄) ① 은행은 지점을 폐쇄하려는 경우 지점의 폐쇄가 은행이용자의 접근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지점폐쇄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금융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지점 폐쇄영향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에는 폐쇄대상 지점이 소재한 지역의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지점의 폐쇄로 인하여 은행이용자의 접근성이 현저히 낮아진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수단을 마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은행은 지점의 폐쇄일 3개월 전에 폐쇄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6개월 전에 공시하여야 한다.

⑤ 은행은 지점 폐쇄 이후 은행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의2 은행대리업

제43조의5(은행대리업의 인가) ①

<신 설>

<신 설>

은행대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은행대리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이 250억원 이상일 것

2. 은행대리업 경영에 드는 자
금 조달방안이 적정할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은행대리업을 경영하기에 충
분한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
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③ 제2항에 따른 요건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에 은행대리
업자의 건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은행대리업 인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신 설>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43조의6(금융기관의 은행대리업 등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제43조의5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은행
2.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

<신 설>

고

7.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신관서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43조의7(은행대리업 인가 취소)

금융위원회는 은행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은행대리업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은행대리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은행대리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

2. 인가 내용 또는 인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영업정지 기간에 그营业을 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외의 경우로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u><신 설></u>	<u>제43조의8(최저자본금) 은행대리</u> <u>업자는 제43조의5에 따른 인가</u> <u>를 받아 은행대리업을 경영할</u> <u>때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u> <u>자본금을 유지하여야 한다.</u>
<u><신 설></u>	<u>제43조의9(인가 등의 공고) 금융</u> <u>위원회는 제43조의5에 따른 인</u> <u>가를 하거나 제43조의7에 따라</u> <u>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u> <u>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u> <u>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u> <u>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u>
<u><신 설></u>	<u>제43조의10(업무범위) ① 은행대</u> <u>리업자는 은행업무의 대리 또</u> <u>는 중개 업무를 운영할 수 있</u> <u>다.</u> <u>② 은행대리업자는 은행대리업</u> <u>무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u> <u>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u> <u>령으로 정하는 업무 이외의 업</u> <u>무를 운영할 수 없다.</u>
<u><신 설></u>	<u>제43조의11(지점의 설치) 은행대</u> <u>리업자는 인가받은 영업구역에</u> <u>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u> <u>라 지점을 설치하여야 한다.</u>
<u><신 설></u>	<u>제43조의12(대리·중개업무의 표</u>

<신 설>

<신 설>

시) 은행대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을 위하여 업무를 대리·중개한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3조의13(유사상호 사용 금지)

은행대리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은행대리 또는 은행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거나 그 업무를 표시할 때 은행대리업무 또는 은행중개업무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제43조의14(서류의 작성·보존 의무)

① 은행대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은행대리업과 관련된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은행대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그 밖의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하거나 은행대리업무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의 보존기간, 보존방법 및

<신 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15(업무보고서의 작성·

제출) ① 은행대리업자는 대리·중개하는 은행별로 구분하여 매월의 업무 내용을 기술한 보고서를 각 해당 은행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대표자와 담당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신 설>

제43조의16(이용자재산과 고유재

산의 구분) ① 은행대리업자는 이용자의 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은행대리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이용자의 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또는 다른 이용자의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43조의17(지도·감독 및 제재)

① 은행은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예금자 등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도록 대통령

<신 설>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
대리업자의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은행대리업자
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
하여 은행대리업의 건전한 경
영을 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거나 이용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
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
로 하여금 해당 위반행위의 중
지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
명령

2.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
지

제43조의18(경영공시) 은행대리업
자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
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
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

<u><신 설></u>	<u>하여야 한다.</u>
	<u>제43조의19(준용규정) 제34조제1</u>
	<u>항,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제3</u>
	<u>항은 은행대리업자에 준용한다.</u>
	<u>이 경우 “은행”은 “은행대리업</u>
	<u>자”로, “은행업”은 “은행대리</u>
	<u>업”으로 본다.</u>
<u><신 설></u>	<u>제43조의20(손해배상책임) 은행은</u>
	<u>은행대리업자가 은행대리업을</u>
	<u>영위하면서 이용자에게 입힌</u>
	<u>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u>
	<u>만, 은행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u>
	<u>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u>
	<u>다.</u>
제44조(은행의 감독) 금융감독원	제44조(은행의 감독) -----
은 금융위원회의 규정과 지시	-----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
그 밖의 관계 법률, 금융위원회	-----
의 규정·명령 및 지시에 대한	-----
<u>은행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여</u>	<u>은행 및 은행대리업자-----</u>
<u>야 한다.</u>	<u>-----.</u>
제64조(청문) 금융위원회는 다음	제64조(청문)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
한다.	-----.
<u><신 설></u>	<u>1. 제43조의7에 따른 인가의 취</u>

1. · 2. (생략) 제66조(벌칙) ① (생략) ② <u>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은행업을 경영하는</u>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신설></u> <u><신설></u> 제68조(벌칙) ① <u>은행의 임원, 지배인, 대리점주(대리점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임원, 지배인, 그 밖의 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이하 “은행의 임원등”이라 한다)이나 그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u>소</u> 2. · 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제66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1. <u>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은행업을 경영하는 자</u> 2. <u>제43조의5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은행대리업을 경영하는 자</u> 제68조(벌칙) ① <u>은행(은행대리업자를 포함한다)의 임원</u>----- ----- ----- ----- ----- ----- ----- ----- ----- -----.
---	---

1. ~ 5. (생략)

<신설>

6. ~ 8. (생략)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7의4.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제43조의8을 위반하여 최저자본금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6. ~ 8. (현행과 같음)

제69조(과태료) ① -----

-----.

1. ~ 7의4. (현행과 같음)

7의5. 제43조의13을 위반하여 유사상호를 사용한 자

7의6. 제43조의15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은 은행대리업자

7의7. 제43조의16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재산을 고유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은행대리업자

7의8. 제43조의18를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한 은행대리업자

7의9. 제43조의19에서 준용하는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한 은행

7의5. (생략)

8. ~ 11.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1.·2. (생략)

<신설>

③ (생략)

④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니한 은행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신설>

행대리업자

7의10. (현행 제7호의5와 같음)

8. ~ 11. (현행과 같음)

② -----

-----.

1. 제2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지점폐쇄영향평가의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4. 제43조의19에서 준용하는 제3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은행대리업자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

1. 제2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폐쇄 사실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공시를 게을리 한 은행

2.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

<u><신 설></u>	<u>니한 은행</u>
	<u>3. 제43조의12를 위반하여 대리</u> <u>· 중개업무를 표시하지 아니</u> <u>한 은행대리업자</u>
<u><신 설></u>	<u>4. 제43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u> <u>장부, 그 밖의 서류의 작성</u> <u>및 보존 의무를 게을리 한</u> <u>은행대리업자</u>
⑤ · ⑥ (생략)	⑤ · ⑥ (현행과 같음)